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 공고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확보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9.

광 주 시 장

1. 개 요

- 관련근거 : 한강수계법 제8조의 2
- 계획기간 : 2021. 1. 1. ~ 2030. 12. 31.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지역
- 대상물질 :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2. 시행(적용)시기 : 2021. 10. 01.

3. 할당 대상지역 : 광주시 전 지역

4. 그간 추진사항

- 2018. 11. 7. : 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경기도)
- 2019. 7. 18. : 중간보고회 개최
- 2020. 12. 21. : 2단계 기본계획(안) 제출 (경기도⇒ 환경부)
- 2021. 1. 13. : 2단계 한강수계 지역개발사업 가할당 방안 알림 (경기도⇒ 광주시)
- 2021. 8. 30. :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 광주시)

5. 대상사업

-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대상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 사업)]
 - 소규모 개발사업 :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사업 (건축물대장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인접·연접 합산 규정 적용)
 - 소규모이외 개발사업 : 소규모개발사업 이외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대상사업 [붙임참고]

6. 단위유역별 할당 부하량

구 분		BOD(kg/일)		T-P(kg/일)	
		승인량 (2025년까지최대사용량)	유보량	승인량 (2025년까지최대사용량)	유보량
경안A2	점	21.42	19.39	2.021	1.836
	비 점	27.06	0.00	1.001	0.000
	합 계	48.48	19.39	3.022	1.836
경안B1	점	12.82	7.18	1.500	0.000
	비 점	10.04	0.00	0.400	0.000
	합 계	22.86	7.18	1.900	0.000
경안B2	점	41.96	23.51	4.976	0.000
	비 점	16.98	0.00	0.867	0.000
	합 계	58.94	23.51	5.843	0.000
경안B3	점	30.12	16.88	4.156	0.000
	비 점	12.54	0.00	0.663	0.000
	합 계	42.66	16.88	4.819	0.000
북하A	점	1.21	0.79	0.400	0.000
	비 점	2.00	0.00	0.200	0.000
	합 계	3.21	0.79	0.600	0.000
한강F2	점	3.00	0.00	0.300	0.000
	비 점	0.20	0.00	0.030	0.000
	합 계	3.20	0.00	0.330	0.000
한강F6	점	17.00	0.00	1.077	0.000
	비 점	1.46	0.00	0.080	0.000
	합 계	18.46	0.00	1.157	0.000
한강F7	점	35.00	0.00	3.000	0.000
	비 점	10.10	0.00	0.182	0.000
	합 계	45.10	0.00	3.182	0.000
한강F8	점	151.32	0.00	6.724	0.000
	비 점	4.00	0.00	0.054	0.000
	합 계	155.32	0.00	6.78	0.000
총 계(점)		313.85	67.75	24.154	1.836
총 계(비점)		84.38	0.00	3.477	0.000
총 계		398.23	67.75	27.631	1.836

※ 향후 시행계획에서 연차별 여유량 배분 시 재공고 할 예정

7.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관련

● 할당 기준 및 일반사항

- 인가·허가 신청 시 주관부서 협의요청 순으로 할당[단, 관련서류(수질오염 총량검토서, 서약서 등) 미비로 수질정책과 보완 시 완료된 보완서류 제출 시점을 협의 순으로 함]
-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개발부하량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공사업은 주관부서에서 개별법 검토후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할당협의요청 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내에서 할당가능
-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중 최초년도사업은 (기 할당받은 주택 건설사업, 지구단위사업, 역세권사업 등)명확히 재협의 대상 사업임을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 할당받은 것으로 간주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인·연접 검토서류 등 관련자료 제출
- 사업부지는 도로부지(진입도로 등)를 포함 함
- 잔여부하량은 시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지구단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

-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발생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계획으로 반영될 경우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함

● 할당협의 시기

- 지구단위사업,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에 준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법 검토 후 입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할당협의 요청
- 위 사업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신고) 등은 인가·허가 신청 시 할당협의 요청

● 할당한 사업의 부하량 회수방안

- 사업의 불승인·불허가 또는 승인취소·허가취소·자진취소(취하)하는 경우 할당부하량 회수
- 오염총량관리계획상 최초년도 개발사업은 회수조건 미적용

● 지역개발부하량(소규모개발사업) 할당계획

-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설치사업에 해당되며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카드 작성에 필요한 건축개요 및 용도별 세부면적표, 지목변경 내역 등 제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할당계획

【지역개발부하량(소규모 외 개발사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은 할당협의 불가하며 지정할당시설, 환경영향평가 사업은[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포함하며 T-P 점 기준으로 0.030(kg/일)초과는 할당불가]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 지정할당시설 요건 [오수발생량 70(㎡/일)이상, BOD 3mg/ℓ, T-P 0.5mg/ℓ 처리가능]

오수발생량 (㎡/일)	방류수 수질기준(mg/l)				비 고
	BOD		T-P		
	법적	적용	법적	적용	
70(㎡/일) 이상	10.0	3.0	2.0	0.5	

※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동일 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함

- 지정할당 시설은 위 기준과 별도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강화된 조건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또는 자가 측정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여됨
- 점·비점 BOD 0.02(kg/d)미만, T-P 0.002(kg/d) 미만은 '0(kg/d)'으로 할당협의 가능

【지역개발부하량(소규모개발사업)】

- 자연증감부하량으로 할당협의 가능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대상 사업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대상 중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대상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불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대상 사업

-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 시 :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연결 시 : 3종 이상 폐수배출시설 경우 지정할당 시설로 지정관리 할 시 할당 가능한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 ※ 폐수 무방류, 전량위탁처리, 재이용은 할당협의 가능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사업

- 비점 T-P 할당량이 0.002kg/일 이상 사업 건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설치 (소규모개발사업은 제외)
 - 물환경정책 방향에 따라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설치 하여야 함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LID기법 적용 알림(13. 7.)
 -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 ※ 자연형 시설 : 투수성포장, 침투도랑, 식생수로, 인공습지, 침투저류지 등

8. 개발사업 할당의 제한

- 연차별·단위유역별 할당량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검토기관(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사항 해소 시까지 해당유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 시 초과사유 해소 시 까지 제한

■ 단위유역 구분

단위유역	지 역
경안A02	오포읍 능평리, 신현리, 문형리
경안B01	곤지암읍 건업리, 곤지암리, 만선리, 봉현리, 부항리, 삼합리, 수양리, 신대리, 신촌리, 연곡리, 열미리, 오향리, 유사리, 이선리, 장심리
경안B02	곤지암읍 삼리 초월읍 늑현리, 대쌍령리, 도평리, 산이리, 선동리, 쌍동리, 용수리, 지월리(37%), 학동리 도척면 궁평리, 노곡리, 도웅리, 방도리(48%), 상림리, 유정리, 진우리, 추곡리
경안B03	오포읍 고산리, 매산리, 양별리, 추자리 초월읍 지월리(8%) 경안동, 역동, 쌍령동, 송정동, 목현동, 탄별동, 회덕동(81%), 목동, 삼동, 장지동, 중대동, 직동, 태전동
북하A	도척면 방도리(52%)
한강F02	퇴촌면 영동리(74%)
한강F06	남한산성면 검복리, 광지원리(47%), 불당리, 산성리, 엄미리(93%), 오전리, 회덕동(19%)
한강F07	초월읍 무갑리(97%), 신월리, 지월리(41%) 퇴촌면 관음리(94%), 도수리(38%), 우산리, 원당리(91%), 정지리(11%)
한강F08	초월읍 무갑리(3%), 서하리, 지월리(14%) 퇴촌면 관음리(6%), 광동리, 도마리, 도수리(62%), 무수리, 영동리(26%), 오리, 원당리(9%), 정지리(89%) 남중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우천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광지원리(53%), 엄미리(7%), 상번천리, 하번천리

단위유역도



■ 관로누수비 · 관로월류비

공공(폐수)처리시설명	관로누수비(%) - 소수네째자리				관로월류비(%)			
	유량비	BOD비	T-N비	T-P비	유량비	BOD비	T-N비	T-P비
오폐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매산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양벌공공하수처리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광주시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근지암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삼리공공하수처리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방도공공하수처리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광주추곡리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도척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광동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분원하수종말처리장	4.529%	1.073%	1.998%	2.044%	0.000%	0.000%	0.000%	0.000%
삼성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귀여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검천리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수청공공하수처리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엄미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경안하수종말처리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오전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불당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검복마을하수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방류시 방류수질(mg/L)		
	BOD	T-N	T-P
오폐하수종말처리장	4.000	5.148	0.160
매산하수종말처리장	5.000	5.939	0.200
양벌공공하수처리시설	3.500	10.849	0.160
광주시하수종말처리장	3.000	6.819	0.150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3.500	4.205	0.160
삼리공공하수처리시설	3.500	8.372	0.160
방도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	9.595	2.000
광주추곡리마을하수도	10.000	9.176	2.000
도척하수종말처리장	4.000	5.459	0.160
광동하수종말처리장	4.000	4.831	0.160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5.000	5.630	0.200
분원하수종말처리장	5.000	6.403	0.200
삼성하수종말처리장	10.000	8.167	2.000
귀여하수종말처리장	10.000	11.828	2.000
검천리마을하수도	10.000	10.980	2.000
수청공공하수처리시설	10.000	9.358	2.000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장	5.000	4.726	0.200
엄미마을하수도	10.000	2.956	2.000
경안하수종말처리장	3.000	3.985	0.150
오전마을하수도	10.000	7.367	2.000
불당마을하수도	10.000	6.345	2.000
검복마을하수도	10.000	9.293	2.000

■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가. 개발사업의 범위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 사업)
- ① 관계기관 협의사업, ②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③ 공동주택(20세대 이상), ④ 특대유역 내 하수 배출건축물이나 그 밖의 설치사업, 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전략, 소규모 영향평가 사업 포함) 등

나. 개발사업의 구분

구분	내용
1. 공동주택사업	-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단지개발	-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단지, 유통 및 물류단지, 주택단지 등
3. 시설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화장시설, 공동묘지, 불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4. 지구단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등
5. 택지개발사업	- 대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건설 등의 공공 시설 정비를 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 행위
6. 교통망확충계획	- 간선 및 지선 계획
7. 특대유역(광주시)	- 건축연면적 400㎡이상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 오수배출 시설 설치사업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그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성실히 제출할 것입니다.
2.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반려, 불가, 허가 취소 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통보 할 경우 개발부하량 회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당받은 개발부하량 회수 시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절차 이행과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광주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4. 금회 개발부하량 산정은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준공완료까지 할당받은 개발부하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붙임 인감증명서(건축주 및 토지주) 1부.

20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토지주) 주 소 : 성 명 : (인)

광주시장 귀하

